

담당	책임자

# 특정금전신탁 계약서

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.

- ※ 뒷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.
- ※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(고객)와 수탁자(은행)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■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사항

신탁계약일	계약명	계약번호				
구 분		내용				
제2조	신탁금액					
제3조	신탁기간 (신탁기간 만료시 재산교부 가능일 : )					
제4조	신탁원본의 수익자	성명 : 인(서명)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주소 :				
	신탁이익의 수익자	성명 : 인(서명)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주소 :				
제7조	운용내역 통보	<input type="checkbox"/> 자택우편,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장우편,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(E-mail), <input type="checkbox"/> 통보생략(불원)				
제13조	신탁기본보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선취기본보수 = 신탁금액 x ( ) % <input type="checkbox"/> 후취기본보수 = 신탁원본평균잔액 x ( )% x 신탁기간(일수) ÷ 365				
제17조	중도해지	<p>1. 구간별 징구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탁계약일로부터 ( ) 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</td> </tr> <tr> <td>신탁계약일로부터 ( ) 이상 ( ) 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</td> </tr> <tr> <td>신탁계약일로부터 ( ) 이상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</td> </tr> </table> <p>2. 경과기간별 징구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해지 신탁금액의 ( )% x 중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수 ÷ 신탁기간 총일수</td> </tr> </table>	신탁계약일로부터 ( ) 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	신탁계약일로부터 ( ) 이상 ( ) 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	신탁계약일로부터 ( ) 이상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	해지 신탁금액의 ( )% x 중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수 ÷ 신탁기간 총일수
신탁계약일로부터 ( ) 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						
신탁계약일로부터 ( ) 이상 ( ) 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						
신탁계약일로부터 ( ) 이상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						
해지 신탁금액의 ( )% x 중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수 ÷ 신탁기간 총일수						
제24조	특약					
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	신탁자금 운용방법 (별표1) (운용대상의 종류)					
	세부내용					
	운용대상					
	위험도					
	운용비중					
	운용대상					
	위험도					
	운용비중					
위탁자	성명 : 인(서명)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주소 :					
대리인	성명 : 인(서명)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주소 :					
수탁자	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음합니다.					
■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(문자통보안내) 신청						
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래의 알림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신청합니다. - 신탁만기도록, 운용자산 만기도록, 추가입금액, 기타 주요 통지사항 등					
	고객명 : 대리인 :	인(서명) 인(서명)				



# 특정금전신탁 계약서

## 제1조 (신탁의 목적)

위탁자는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.

## 제2조 (신탁금액)

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\_\_\_\_\_ 원으로 한다.

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추가신탁 할 수 있다. 이 때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추가신탁을 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## 제3조 (신탁기간)

① 신탁기간은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부터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까지로 한다. (신탁기간 만료 시 재산교부 가능일 :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)

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## 제4조 (수익자)

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  수탁원본의 수익자 주소 : \_\_\_\_\_

    성명 : \_\_\_\_\_

  신탁이익의 수익자 주소 : \_\_\_\_\_

    성명 : \_\_\_\_\_

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, 상속되지 아니한다.

③ 위탁자가 제1항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를 수익자로 본다.

## 제5조 (신탁재산의 운용)

① 위탁자는 [별표1]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[별표2]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,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. 다만,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-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개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또는 자금증거회사의 종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.

③ 주식에 운용할 경우 등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.

④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· 운용한다.

⑤ 위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## 제6조 (내리인의 지정)

①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내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체의 자사권을 내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탁자는 내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내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7조 (내리인 통보 등)

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-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· 전자우편 등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

운용내역 통보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자택우편,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장우편,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(E-mail), <input type="checkbox"/> 통보생략(불일) 위탁자 : _____ (인/서명)
------------	--

②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## 제8조 (장부·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)

①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·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신탁재산 명세서
2.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
3. 신탁재산 운용내역서

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수탁자가 수익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용자가 기재된 서면 등을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
1.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·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

2.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·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
3.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· 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## 제9조 (법적절차)

신탁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소비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.

## 제10조 (원본과 이의의 보전)

이 신탁계약의 원본과 이의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
## 제11조 (손익의 귀속 등)

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.

## 제12조 (신탁재산의 표시)

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 임을 표시한다.

## 제13조 (신탁기본보수)

① 신탁기본보수는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선취기본보수와 후취기본보수의 합으로 한다.

### 1. 선취기본보수

$$\text{선취기본보수} = \text{신탁금액} \times ( )\%$$

제17조에 따라 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경우, 만기일까지 미경과 신탁기간에 대한 선취기본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원활한다.

### 2. 후취기본보수

$$\text{후취기본보수} = \text{신탁원본평균잔액} \times ( )\% \times \text{신탁기간(일수)} \div 365$$

이 경우,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(일수)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(일수)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
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(일수)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로부터 제 3 항에서 정한 신탁 보수 수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된 후취기본보수를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14조 (신탁수익보수)

① 수탁자는 신탁수익보수(이하 "수익보수"라 함)를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최초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. 이 때 신탁원본은 최초 신규일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까지 일부해지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.

②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탁기간 만료일 ( )영업일 전일

2.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(일부해지 포함)를 신청한 날 이후 ( )영업일

③ 기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한다.

2. 신탁재산의 성과를 꾸준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한다.

3.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어야 한다.

④ 제6항의 수익보수 산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다음과 같다.

기준지표: ( )

⑤ 이하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.

가.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,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 
나.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이후 수익보수 계산일 전일까지 수익보수에 지급한 신탁이익

2.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.

3. 기준지표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중료시 기준지표 대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중료시 기준지표의 상승 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.

⑥ 수익보수 계산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
1.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익보수는 0 원으로 한다.

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15조 (이익계산 및 지급)

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분기말(연천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)

2. 신탁계약일로부터 매( )월이 경과한 날

3. 신탁계약 해지(일부해지 포함한다)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

4. 신탁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

5. 기타 ( )

② 신탁이익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 익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.

## 제16조 (조세 및 비용)

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 재산 중에서 총당아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한다.

## 제17조 (중도해지)

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,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다음 ()호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.

### 1. 구간별 징구

$$- \text{신탁계약일로부터 ( ) 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\%}$$

$$- \text{신탁계약일로부터 ( ) 이상 ( ) 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\%}$$

$$- \text{신탁계약일로부터 ( ) 이상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\%}$$

### 2. 경과기간별 징구

$$\text{해지 신탁금액의 ( )\%} \times \text{중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 수} \div \text{신탁기간 총일수}$$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1.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

2.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

3.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지하는 경우

④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기간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## 제18조 (신탁계약의 종료사유)

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탁기간이 만료한 때

2.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때

3. 신탁계약이 해지된 때

②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 운용을 중단하고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발생일 현재 신탁재산 운용현상대로 유지한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( ) 비율로 계산한다.

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.

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,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
